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호법초등학교

1. 적용대상

- (공공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공립학교
- (공직자)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등 포함),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등 포함) ※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은 비포함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7.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에 대한 조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조치
- (신고대상 직무) 16개 유형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신고의무자)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신고내용)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③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물품·용역 계약 등 사적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신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 단,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공문 등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 강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한되는 외부활동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u>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u>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u>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u>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 <u>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u>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u>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u>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
 ※ 가족의 범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
 ※ 단,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적용 제외

㉘ **수익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 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

㉙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㉚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3.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 **[처리 절차]** 신고접수(누구나 가능) → 사실관계 확인(권익위원회) → 결과통보
- **[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준용
- **[제재 처분]** 부당이득의 환수, 몰수 및 추징, 징계 및 벌칙(형벌, 과태료 등)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호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 이해충돌의 정의 (법 제2조제4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공직자는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집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적용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심의안건의 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 회의 소집일 이전에 회의 안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 회의 참석 전에 사적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등 조치
-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따른 위원 제척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상 이익 환수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 각 목)

가.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무 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음
- 위반 시, 징계 및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